장애인 고용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및 고용 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고용 1
1. 장애인 고용 개요 4
1.1. 장애인의 개념 4
1.1.1. "장애인"이란? 4
2. 장애인 고용 지원 6
2.1. 고용 전 지원 6
2.1.1. 고용시설자금 융자 6
2.1.2. 시설장비 무상지원 9
2.1.3. 보조공학기기 지원 12
2.1.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13
2.2. 고용 후 지원 17
2.2.1.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17
2.2.2. 근로지원비용 지원 20
2.2.3. 재택근무 지원 22
2.2.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24
2.2.5. 더 편한 일터 만들기 25
3. 사업주 의무 29
3.1. 장애인 고용의무 등 29
3.1.1. 장애인 고용의무 29
3.1.2. 장애인고용부담금 30
3.1.3.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35
3.2. 장애인 차별금지 등 39
3.2.1. 장애인 차별금지의무 39
3.3.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41
3.3.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41

1. 장애인 고용 개요

1.1. 장애인의 개념

1.1.1. "장애인"이란?

장애인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기준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콘텐츠 소개

장애인 고용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 『장애인 고용』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세 부 내 용
장애인 고용 개요	▪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 지원	▪ 고용시설자금 융자 ▪ 시설장비 무상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고용관리비용 지원 ▪ 재택근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사업주 의무	▪ 장애인 고용의무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 장애인 차별금지의무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 그 밖에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 수당 및 연금지원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이동 편의 지원 ▪ 장애인 시설 ▪ 장애인건강지원
장애인 취업·창업	**장애인 교육**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일반교육 ▪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지원 ▪ 특수교육

2. 장애인 고용 지원

2.1. 고용 전 지원

2.1.1. 고용시설자금 융자

고용시설자금 융자

융자 개요

▪ 고용시설자금 융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10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 ※ 우대 조건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②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③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범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및 생산라인 조정 비용	
융자한도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까지	
융자조건	사업주	▪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함(사업주는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의 1/2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해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해야 함) ▪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대출금리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 보전금리(연 5%)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함(다만,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함)
	융자기간	거치기간 2년, 균등분할상환기간 3년 등 총 5년

융자 신청 및 처리

▪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1부
-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 처리 절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사업주지원-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융자 결정 취소

▪ 고용시설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1.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고용시설자금 융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융자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이 1. 4. 및 6.에 해당하여 융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8항).

융자금 반납

▪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해당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않은 경우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해당 융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1조제1항).

▪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지급받은 사업주가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고용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해당 융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1조제2항).

※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2. 시설장비 무상지원

시설장비 무상지원

지원 개요

▪ 시설장비 무상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 제10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대상자</td><td colspan="2">▪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
※ 우대 조건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②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③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td></tr>
<tr><td rowspan="3">지원내용</td><td>지원대상시설</td><td>지원금액</td></tr>
<tr><td>1.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①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td><td>▪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주: 1회당 2천만원 이내
▪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주: 1회당 4천만원 이내</td></tr>
<tr><td>2.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td><td>▪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2/3</td></tr>
<tr><td>지원한도</td><td colspan="2">사업주당 3억원 이내</td></tr>
<tr><td>지원조건</td><td colspan="2">▪ 1.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해야 함(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
▪ 2.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2.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해야 함</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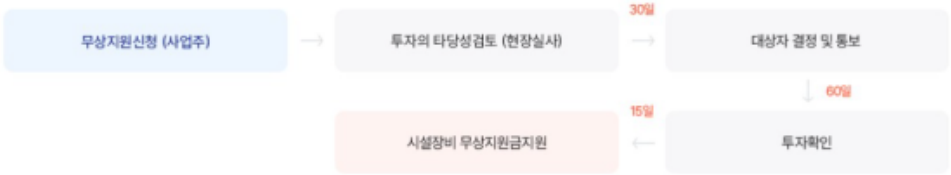
지원 신청 및 처리

▪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1부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 처리 절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사업주지원-시설장비무상지원>

지원 결정 취소

▪ 시설장비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1.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시설장비 무상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시설장비 무상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융자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은 사람이 1. 4. 및 7.에 해당하여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8항).

지원금 반환

▪ 시설장비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는 해당 무상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5항).

▪ 시설장비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실행되어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회수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7항).

> ※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시설장비무상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3.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

▪ 장애인인 사업주(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천 5백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1항 본문).

▪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구입 결정일)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2항).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3항).

▪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며, 해당 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4항 본문).

1.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
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 95퍼센트]
3. 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1. 및 2.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4. 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1. 및 2.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4항 단서).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5항 본문).

※ 다만, 추가 대여가 필요한 경우 1회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5항 단서).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조제3항).

-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 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우선 제출 후, 지원결정 처리 기한 전까지 제출)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 지원
-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 결정 취소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사업주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1항·제5항 본문).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공학기기 사후관리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방문, 전화, 전화우편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점검받습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제3항 참조).

> ※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지원 –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인증

▪ 인증 신청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1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 인증서 발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인증 취소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

구분	내용
필요적 인증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선택적 인증 취소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무상지원금 신청

무상지원금 신청 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2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을 때,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해서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함)
-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지원금액(총 지원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3항).

- 다만, 무상지원금의 10분의 9 이상을 지급받은 사업장이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4조제2항).

용도	한도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2년간 임금의 일부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됨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만 해당)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각종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소요 비용	—

▪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무상지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0억원 한도로 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4조제4항).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2조제1호).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업장

※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2조제4호).

-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등의 작업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권장시설을 포함)
-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물리치료실·재활치료실 등의 부대시설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2조제3호).

지원 신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고용 후 지원

2.2.1.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해당)

<table>
<tr><td>지원기준</td><td>▪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106억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 기준 인원 산입
①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함
②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함</td></tr>
<tr><td>지원기간</td><td>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음</td></tr>
<tr><td>지급단가</td><td><table><tr><th>경증남성</th><th>경증여성</th><th>중증남성</th><th>중증여성</th></tr><tr><td>35만원</td><td>50만원</td><td>70만원</td><td>90만원</td></tr></table>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td></tr>
<tr><td>고용장려금 계산</td><td>▪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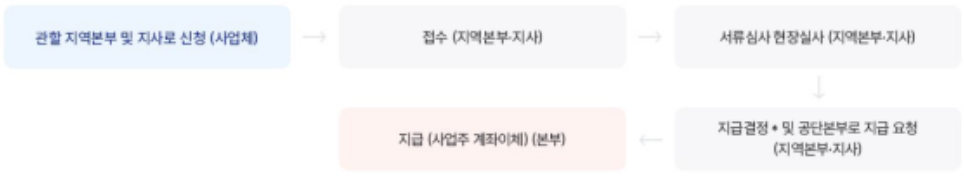
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고용장려금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다만,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지원 신청 및 처리

▪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처리 절차(「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4조 및 제5조)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 지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제재

▪ 고용장려금의 부당이득금은 다음에 따라 징수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제84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0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구분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징수 금액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3배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
	반환 기한	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제한	1년(고용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
	형사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징수 면제 가능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징수 금액	지급받은 금액
	반환 기한	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2. 근로지원비용 지원

근로지원비용 지원

"근로지원비용"이란?

▪ “근로지원비용”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지원 개요

▪ 근로지원비용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3항, 별표 1, 2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 ② 사회복지법인 ③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작업지도원 자격기준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배치장소 또는 직무 등을 변경한 지 90일 이내에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적응지도를 실시한 경우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최대 5명)
지급액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
지원기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지원 신청 및 처리

▪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표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제7호서식).

- 근로지원비용지급신청서
-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 처리 절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 및 제19조)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사업주지원-근로지원비용>

지원 결정 취소

▪ 근로지원비용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1. 근로지원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근로지원비용 지원받은 사업주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 간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3항·제10항).

> ※ 근로지원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근로지원비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3.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 지원"이란?

▪ "재택근무 지원"이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지원 개요

▪ 재택근무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2항제7호, 제6조제4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지원 대상자	재택근무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주
지원범위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작업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사무용가구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품목의 A/S기간 종료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 내,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주당 50만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공단 보조공학부에서 무상임대·지원하는 장비
지원한도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이내

지원 신청 및 처리

▪ 재택근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1부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지원 결정 취소

▪ 재택근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1. 재택근무 지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재택근무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재택근무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무상지원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 재택근무 지원을 받은 사람이 1. 4. 및 7.에 해당하여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재택근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8항).

지원금 반환

▪ 재택근무 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5항).

▪ 재택근무 지원 결정이 취소된 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실행되어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회수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7항).

> ※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홈페이지 – 고용장려금 – 재택근무 장비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의무

▪ 다음의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함)을 우선구매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함)
- 중소기업중앙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은행
- 대한상공회의소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 위의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함. 공사비용은 제외)의 0.8%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2.2.5. 더 편한 일터 만들기

더 편한 일터 만들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편의시설·아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4조제1항 및 별표 8).

구분	내용
인증신청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인증대상	▪ 개별시설 중 건축물 ▪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증등급	▪ 최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90% 이상 ▪ 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 일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인증유효기간	▪ 예비인증: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 본인증: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table>
<tr>
<td>인증수수료</td>
<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개별시설인증
(건축물)
단위/ 만원</th><th>비고</th></tr>
<tr><td rowspan="6">본인증</td><td>심사비</td><td>75</td><td rowspan="3">25만원/일</td></tr>
<tr><td>현장심사비</td><td>75(1)</td></tr>
<tr><td>심의비</td><td>125</td></tr>
<tr><td>간접비</td><td>8</td><td>위의 비용
3%</td></tr>
<tr><td>교통비</td><td>120</td><td></td></tr>
<tr><td>계</td><td>403</td><td></td></tr>
<tr><td rowspan="5">예비인증</td><td>심사비</td><td>75</td><td rowspan="2">25만원/일</td></tr>
<tr><td>심의비</td><td>125</td></tr>
<tr><td>간접비</td><td>6</td><td>위의 비용
3%</td></tr>
<tr><td>교통비</td><td>80</td><td>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td></tr>
<tr><td>계</td><td>286</td><td></td></tr>
</table>
</td>
</tr>
</table>

지원 신청 및 처리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제출서류
예비인증	▪ 신청자의 신청공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신청서 ▪ 건축물 자체평가서 ▪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계획도면 4부,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도면 4부) ▪ 첨부서류 및 도서가 저장된 장치(자체평가서, 기본계획도면,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
본인증	▪ 신청자의 신청공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신청서 ▪ 건축물 자체평가서 ▪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준공도면 4부,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도면 4부) ▪ 첨부서류 및 도서가 저장된 장치(CD 등)

▪ 처리 절차

▹ 예비인증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 지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본인증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 지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더 편한 일터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의무

3.1. 장애인 고용의무 등

3.1.1.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자

▪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및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구분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총공사 실적액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50명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른 금액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뺌)

의무고용률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8조의2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기준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 기준)	3.4%	3.6%	3.6%	3.8%
공공기관 (근로자 총수 기준)	3.4%	3.6%	3.6%	3.8%
사업주 (근로자 수 기준)	3.1%	3.1%	3.1%	3.1%

▪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

고용계획 수립 등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포함한 다음의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대상자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제8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28호).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2항·제3항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장애인고용부담금</td><td>▪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td></tr>
<tr><td>부담기초액
(2026년 기준)</td><td>▪ 부담기초액: 1,295,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해당)
<table>
<tr><th colspan="4">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th></tr>
<tr><td>1/2 이상 3/4 미만</td><td>1/4 이상 1/2 미만</td><td>1/4 미만</td><td>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td></tr>
<tr><td>1,372,700원</td><td>1,554,000원</td><td>1,813,000원</td><td>2,156,880원</td></tr>
</table>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td></tr>
</table>

※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드는 비용 등

신고 및 납부

▪ 사업주는 다음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서와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제5항·제10항, 제33조의2제1항,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82조제2항제28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구분	내용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신고서 기재사항	▪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 ▪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없는 경우 없다는 뜻을 적음) ▪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신고 및 납부 기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납부방법	▪ 현금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분할납부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 납부 신청 가능 1.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금액에 관계 없이 분할 납부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 다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다음에 따라 연간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음 1. 제1기분: 1월 31일까지 2. 제2기분: 3월 31일까지 3. 제3기분: 5월 31일까지 4. 제4기분: 7월 31일까지 5. 제5기분: 9월 30일까지 6. 제6기분: 11월 30일까지 ▪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의 3% 공제

미납 시 징수

▪ 다음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6항·제7항,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제82조제2항제30호).

구분	내용	
징수사유	1.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주가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주가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징수 사유의 1. 및 2.의 경우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10%의 가산금을 징수	
연체금	▪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0.0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최장 36개월간까지 징수	
징수하지 않는 사유	가산금	▪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체금	▪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납부 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징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납부방법	▪ 현금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과오납 시 충당 및 환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가 부담금이나 징수금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 다음의 순위(같은 순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경우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이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4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29호).

▹ 체납처분비

- 연체금
- 가산금
- 부담금

▪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 환급액이 발생하면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 제22호서식).

> ※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3.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란?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란 연계고용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 ※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라 함)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함)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제1호).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의 개요

▪ 다음에 따라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및 별표).

구분	내용
대상사업장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요건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함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봄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에 따른 연계고용 도급계약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하거나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인원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인원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애인고용률과 고용인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기준으로 할 것 ▪ 해당 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할 것 ※ 해당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함

감면기준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않음 ▪ 연계고용 계약기간 중 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까지 연계고용 실적으로 인정
연계고용 알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으려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를 알선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말함)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제3호).

※ “수급액 비율”이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급액 비율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별표).

※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예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부담금감면 신청 및 처리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분	내용
제출서류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및 사업자 등록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신청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 다만, 1월 10일까지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담금 납부연도 중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금액 중 감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신청기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장

▪ 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통지해야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6조제1항).

연계고용부담금감면 반환 신청 및 처리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부담금 중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제1항, 제5조의2 및 별지 제2호서식).

구분	내용
제출서류	▪ 부담금 감면액 반환 신청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및 사업자 등록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신청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 시 선택한 한 부문에 대해서만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신청기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장

▪ 부담금 감면액 반환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반환액을 결정·통지해야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6조제2항).

>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장애인 차별금지 등

3.2.1. 장애인 차별금지의무

장애인 차별금지

사업주의 차별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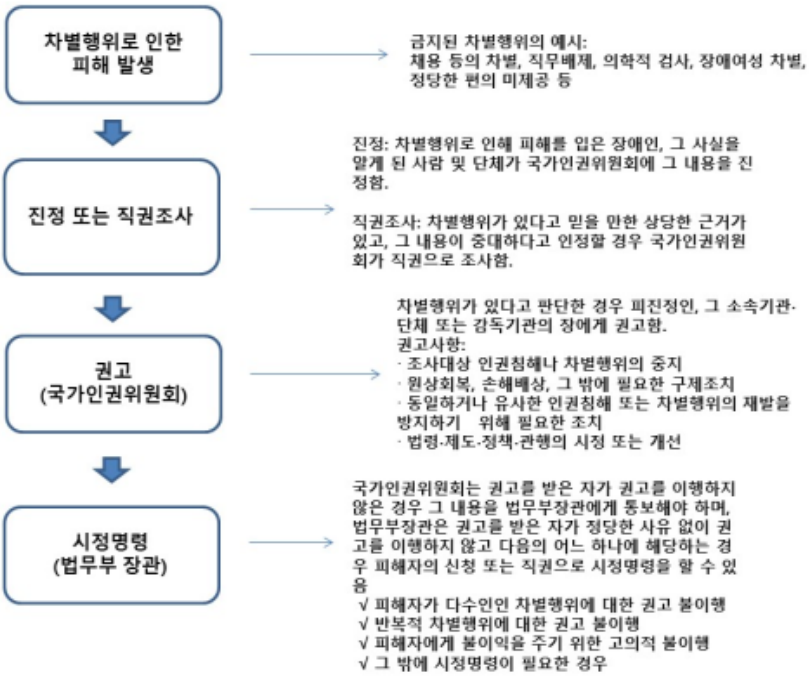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4항).

구분	내용
채용 등의 차별금지	사업주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 등에 있어 차별금지
직무배제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 금지
의학적 검사 금지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장애여성 차별금지	▪ 장애여성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 ▪ 성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
정당한 편의제공	편의제공의 예시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차별 시 제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제재

▪ 금지된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법원을 통한 제재

▪ 구제조치

▹ 법원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 벌칙

▹ 금지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손해배상

▹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차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3.3.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3.3.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란?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제1항).

선임의무

▪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0조).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제4항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3조 및 별표 2. 2. 아).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장애인근로자를 40명 이상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	40	50
장애인근로자를 30명 이상 3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	30	30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2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0	20	20